

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(김혜지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관련 314
----------	-----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2년 12월 22일

발 의 자: 김혜지, 김길영, 남창진,
문성호, 박환희, 송경택,
옥재은, 이상욱, 이승복,
이종배, 장태용, 최호정,
허·훈, 황철규 의원(14
명)

1. 수정이유

- 대안교육지원센터는 이미 서울시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지원 기관을 통해 가능하므로 불필요하고, 등록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의 문분별한 등록을 견제하기 위해 삭제하고자 함

2. 수정의 주요내용

- 가. 제5조 제2항 제2호 삭제
- 나. 제6조 삭제
- 다. 제8조 삭제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○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
○ 초·중등교육법

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안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배움의 권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대안교육” 과 “대안교육기관” 은 「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 이라 한다)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2. “위탁교육기관” 이란 교육감이 대안교육의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데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교육기관을 말한다.
3. “학생” 이란 대안교육이 필요한 아동·청소년을 말한다.

제3조(책무) ① 서울특별시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 이라 한다)은 대안교육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교육감은 서울특별시시장(이하 “시장” 이라 한다)과 협력하여 대안교육기관이 학생 교육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대안교육 지원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5조(지원계획) ① 교육감은 대안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하여 매년 지원계획(이하 “지원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교육기관(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운영·지원에 관한 사항
2. 교육기관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
3. 교육기관 운영점검과 평가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대안교육 지원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6조(재정지원) ① 교육감은 대안교육이 필요한 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해 교육기관에 지원계획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인건비, 교육활동 운영비, 학생 급식비, 입학준비금 등 필요한 경비
2. 그 밖에 교육기관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

② 교육감은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시장에게 「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」에 근거한 교육경비 보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신청 및 지원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.

제7조(지도·감독) ① 교육감은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는지를 확인하고 지도·감독하여야 하며 필요시 교육기관 등을 방문

하여 관계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다. 이 경우 교육기관은 지도·감독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.

② 교육기관이 제6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때에는 그 사용내역 등을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, 그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.

③ 교육감은 지원금을 받은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.

1.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
2.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
3. 대안교육기관이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등록 취소 또는 폐쇄된 경우
4. 위탁교육기관이 지정해제된 경우
5. 그 밖에 관계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

제8조(공공시설 이용) 교육감은 대안교육을 받는 학생이 공공시설을 이용하려는 때에는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 및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9조(협력체계 구축) 교육감은 대안교육 지원을 위하여 교육부, 지방자치단체, 대안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폐지)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「서울특별시
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」는 폐지한다.